



이자료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KAT 기술보고서의 저작권은 기술표준원에 있습니다.

이 기술보고서를 인용하거나 발췌하시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 발 간 :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 연락처 : 02)509-7258~61 (직통 02)503-7948)
- 담당자 : 박현영 연구사
- E-mail : zeolite@kats.go.kr

KATS 기술보고서

- WTO TBT 중앙사무국 3주년 보고서 -



WTO TBT 중앙사무국

- 2 | WTO TBT(무역기술장벽)
- 4 | 무역기술장벽의 최신동향
- 10 | TBT 중앙사무국 주요활동
- 19 | 2011년 WTO TBT 위원회 주요내용
- 21 | 시사점
- 22 | 추진과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TEL 02.509.7278~81

작성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 김미애 과장
(miaekim@mke.go.kr, 02-509-7254)

WTO TBT(무역기술장벽)

-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는 6월의 열기에 더해 100여 개국 대표들의 열띤 토론으로 회의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매년 3차례 열리는 TBT위원회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와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국가간의 총성없는 전쟁터이다.

- ※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WTO 협정으로 전환·출범되면서 WTO TBT 협정이 채택('95, 128개국)되었으며, 현재 153개 국가가 가입
- ※ **TBT(무역기술장벽)**: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51건의 기술장벽 이슈에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K-REACH), EU RoHS와 중국의 RoHS,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 인도 타이어 등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상대국의 기술장벽에 대한 무역제한 효과, 차별적 대우, 투명성 결여 등을 문제 삼으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우리나라도 공세와 수세의 양입장에서 예외일 수 없다.

- WTO TBT에 보고되는 TBT 통보문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무역현안(STC)도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 보건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연간 1400여건 이상의 새로운 기술장벽들이 증가하고 있다.

-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 기술규제에 대해 무역상대국이 기술규제 당사국에 이익을 제기, 매년 3회 개최되는 WTO TBT위원회에서 논의

- 기술표준원은 무역규범의 세계화와 확산되는 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시장친화적인 무역환경개선을 위하여 2008년 9월 29일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하고 올해 3주년이 된다.
- 「TBT 중앙사무국」에서는 기술장벽이 국내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수출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었던 TBT 업무를 「TBT 중앙사무국」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WTO와 FTA 기술장벽 대응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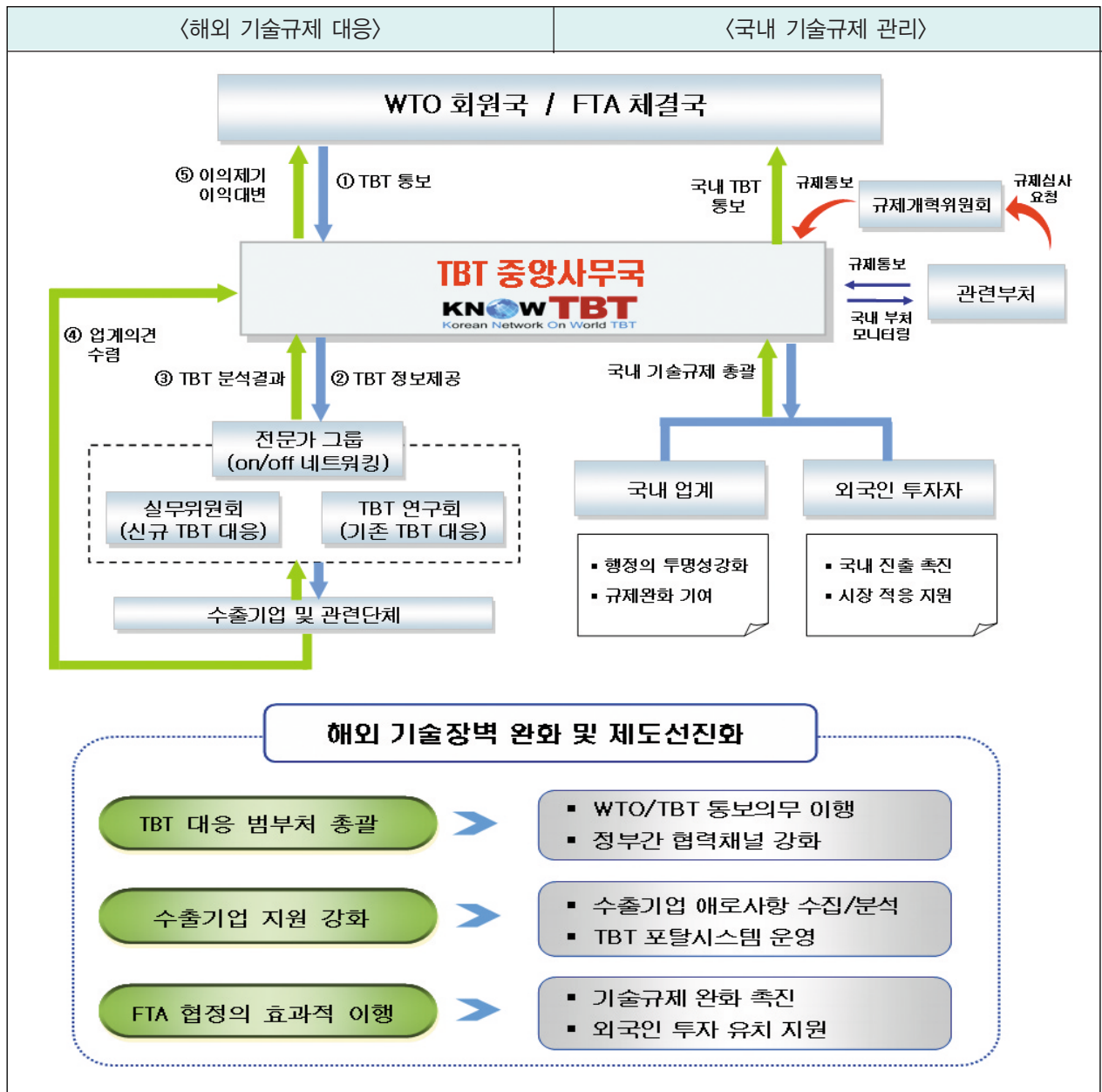
- ※ **TBT 질의처** : 기술표준원(공산품), 농림부(농산품), 보건복지부(식의약품)

- 해외 기술규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 에너지 등 10개 분야 160여명의 TBT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WTO TBT(무역기술장벽)

- 「TBT 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은 WTO 회원국에서 신설 또는 개정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만간 TBT 통보문 뿐만 아니라 TBT 피해 및 해결사례, 업종별/국가별 TBT 현황, 기술규제 현황 및 시험인증기관 정보 등 국내외 모든 기술규제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해외 기술장벽에 대한 정보접근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 TBT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TBT 포털, TBT 앱 및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기업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1〉 TBT 중앙사무국 운영 체계





무역기술장벽의 최신 동향

최근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해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 조치를 통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비관세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통관절차, 수량제한제 등과 같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이다. 성격상 복잡성, 불확실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세 이상의 보호무역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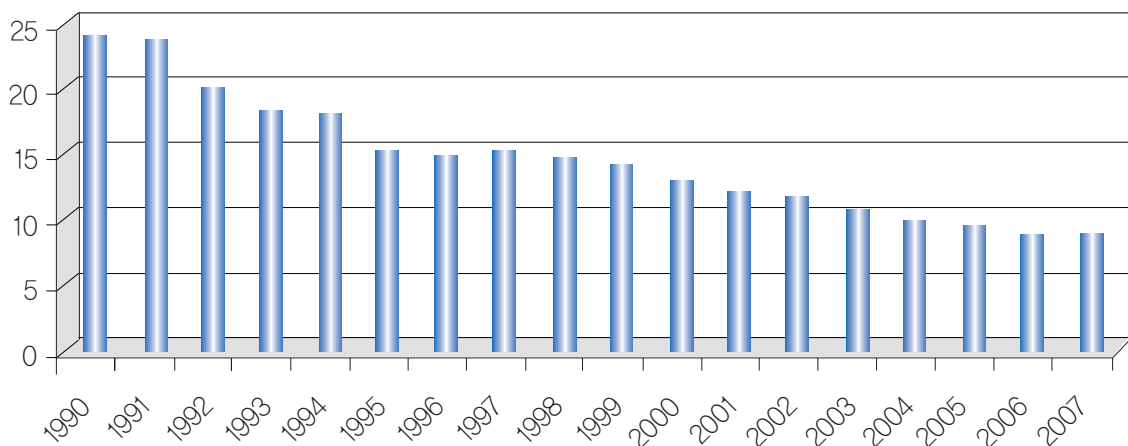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로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동물과 식물 등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조치들이 적용 대상이다.

-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의 서로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해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무역상대국이 국제기준을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검사, 인증제도를 강요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시장진입이 늦어지는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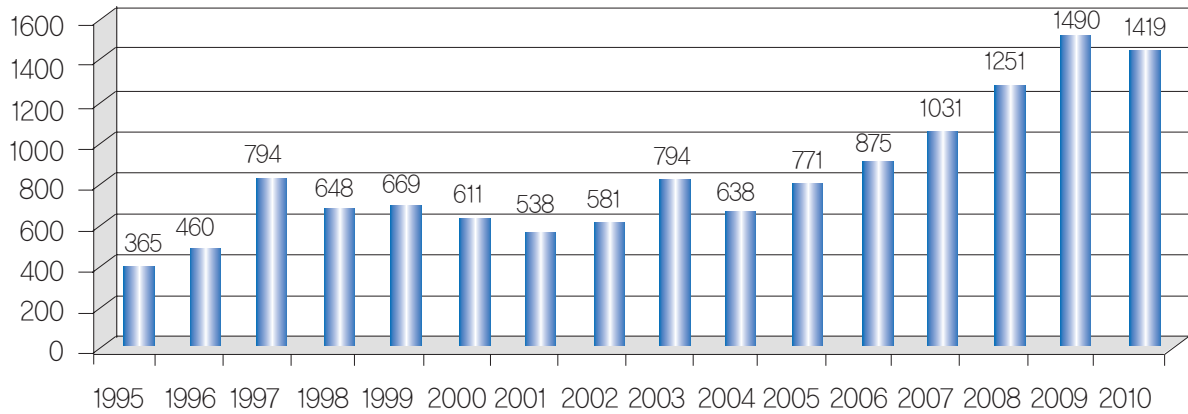
※ 특히, 제품의 적기출하(Time to Market)가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발생이 큼

※ 미국·EU·일본 등의 비관세장벽은 업종에 따라 6~30% 관세율에 상당(Ecorys, 2009)

〈그림 2〉 1990년 이후 평균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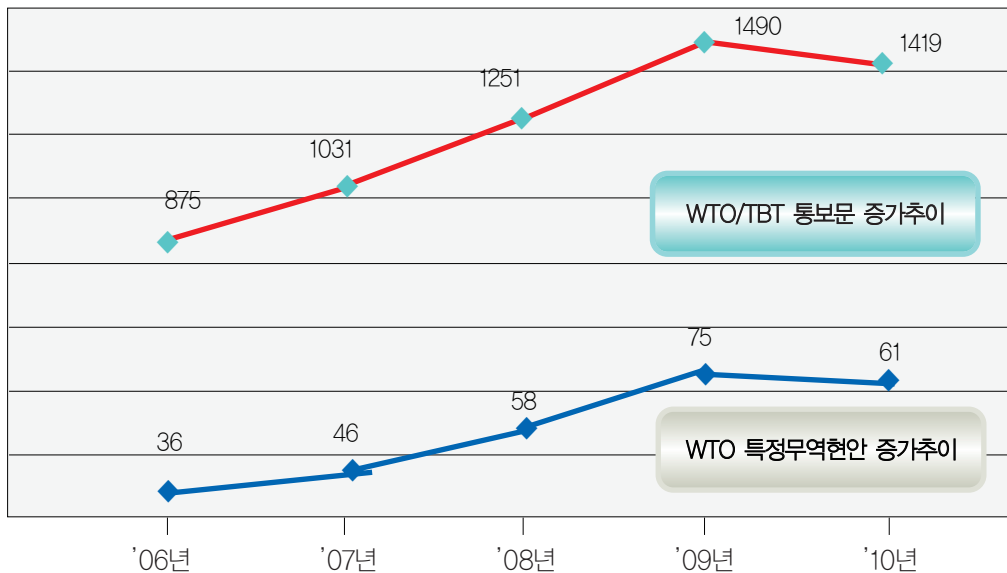
〈그림 3〉 1995년 이후 TBT 통보문 증가추이 (총 통보문 수 : 12,935)



최근 WTO는 회원국의 기술규제 증가와 함께 특정무역현안(STC) 상정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 기술규제에 대해 무역상대국이 기술규제 당사국에 이의를 제기, 매년 3회 개최되는 WTO TBT위원회에서 논의

〈그림 4〉 최근 5년간 TBT통보문 및 STC(신규) 추이





무역기술장벽의 최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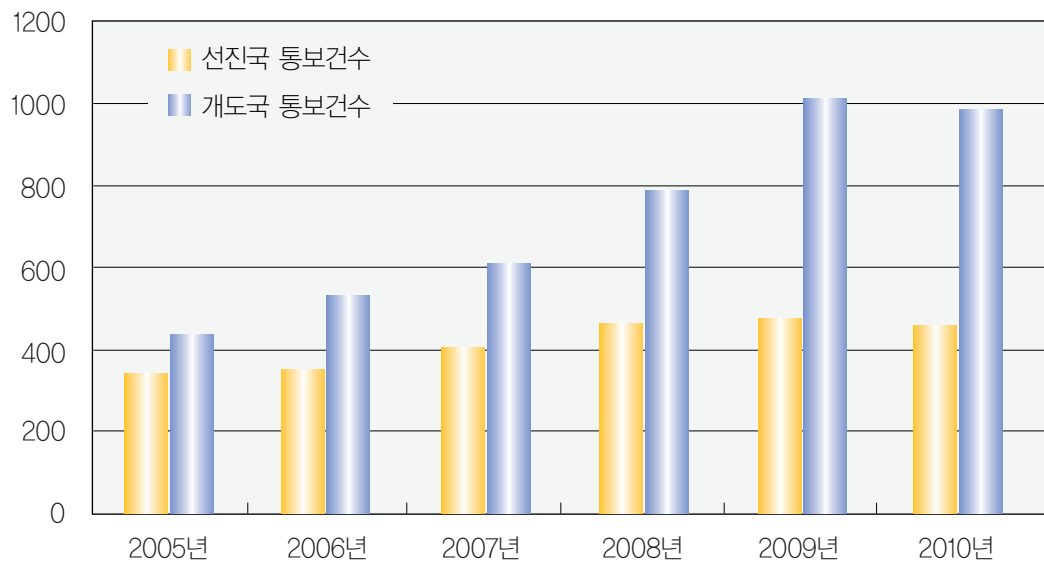
- 과거엔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높은 기술수준을 기술규제에 반영하여 개도국이 선진화된 기술을 단기적으로 쉽게 따라 갈 수 없게 함으로써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 최근엔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국가들도 신규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들은 최근 급격히 경제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 과거 선진국들이 도입하였던 기술규제를 따라서 자국에 적용하고 있다.
 - 이는 과거 선진국의 무역장벽 수단으로 인식되던 기술규제를 최근 개도국에서 많이 활용함으로써 기술규제가 더 이상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도국으로 일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中) 정보보안 제품에 대한 강제인증(CCCIS), 중국강제인증제도(CCC)

※ (동남아) 태국, 말련, 인니, 인도 등이 철강, 타이어 등에 대한 신규 인증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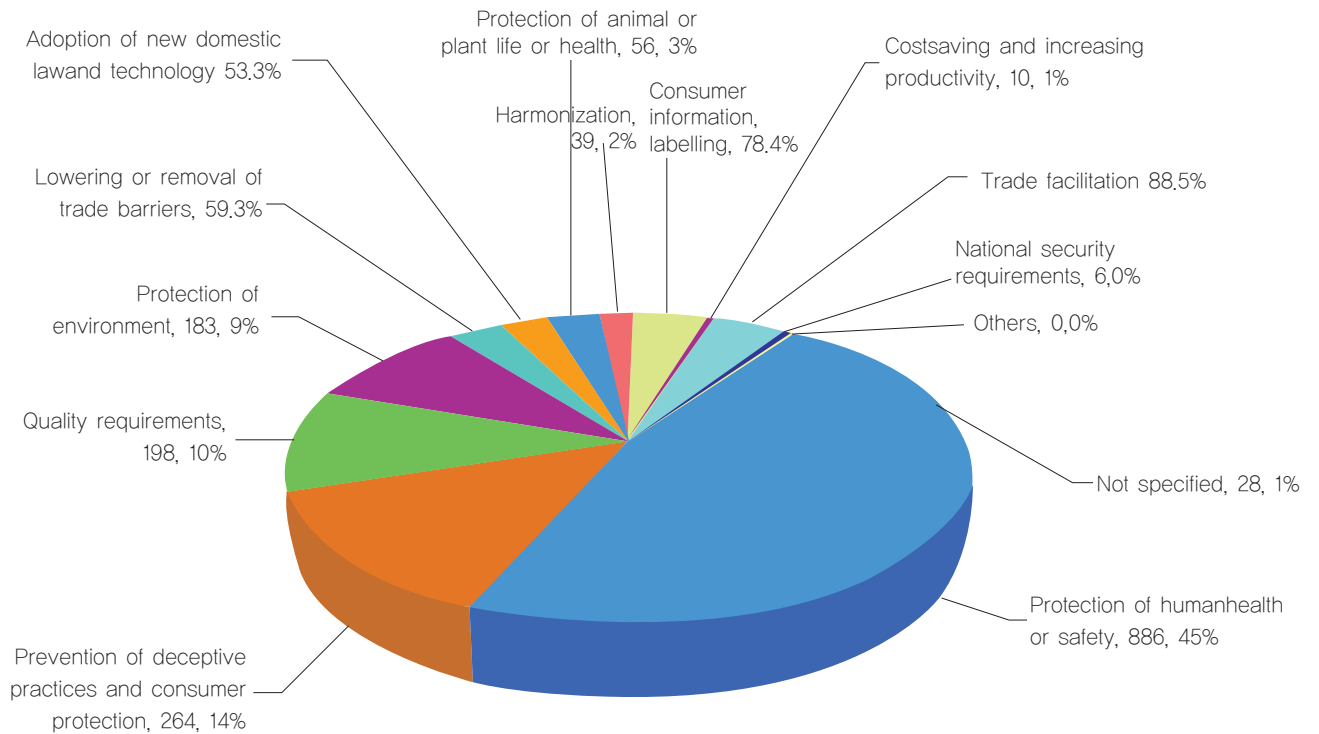
※ '05년 445건(57.7%) → '10년 980건(69%) (2배 이상 증가), 특히, 중국은 '01년 WTO가입 이후 총 772건으로 최다 통보문건수를 기록

〈그림 5〉 선진국 / 개도국 TBT통보문 증가 비교



- 2010년 TBT통보문을 목적별로 구분하면 「사람의 건강 및 안전」(45%), 「기만적 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 보호」(14%), 「품질」(10%), 「환경보호」(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람의 건강 및 안전」, 「기만적 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와 같이 주관적이고 사회적, 문화적 관심이 반영된 통보문 비율이 증가하고
 - 「품질」, 「국제표준과의 조화」, 「소비자 정보제공, 상품표시 부착」과 같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반영되는 통보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 이러한 사실은 신규 또는 개정된 기술규제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놓고 분쟁 소지의 가능성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6〉 2010년 목적별 통보 비율



※ 2010년 TBT통보문 1,419건, 목적별 분류시 기술규제 내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계산(1,948건)



무역기술장벽의 최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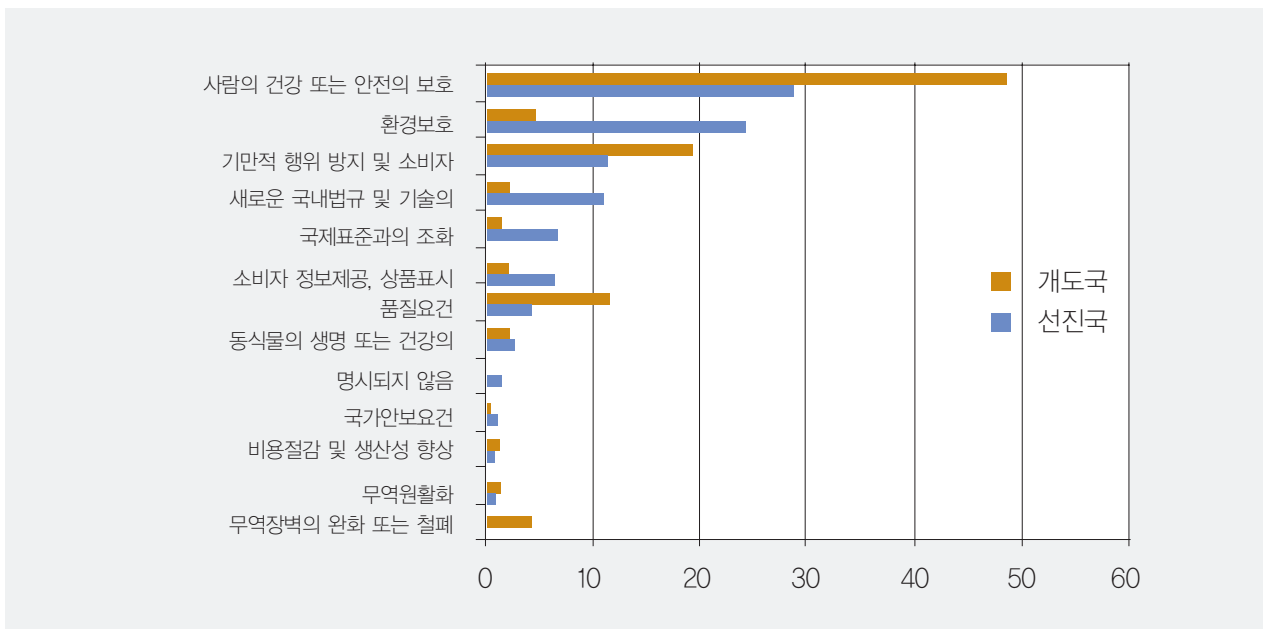
〈표 1〉 2005년 ~ 2009년 목적별 TBT 통보건수

목 적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9	1995~ 2009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431 55.9%	485 55.4%	592 57.5%	730 58.4%	1,032 45.8%	3,270 52.9%	5,724 43.7%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85 11.0%	124 14.2%	106 10.3%	170 13.6%	410 18.2%	895 14.5%	1,714 13.1%
품질요건	18 2.3%	25 2.9%	60 5.8%	42 3.4%	226 10.0%	371 6.0%	970 7.4%
환경보호	88 11.4%	77 8.8%	94 9.1%	108 8.6%	180 8.0%	547 8.9%	1,128 8.6%
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	- 0.0%	1 0.1%	1 0.1%	11 0.9%	98 4.4%	111 1.8%	243 1.9%
새로운 국내법규 및 기술의 채택	64 8.3%	77 8.8%	67 6.5%	107 8.6%	86 3.8%	401 6.5%	1,159 8.9%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5 0.6%	9 1.0%	10 1.0%	13 1.0%	56 2.5%	93 1.5%	199 1.5%
국제표준과의 조화	26 3.4%	32 3.7%	19 1.8%	18 1.4%	49 2.2%	144 2.3%	644 4.9%
소비자 정보제공, 상품표시 부착	22 2.9%	31 3.5%	49 4.8%	46 3.7%	42 1.9%	190 3.1%	480 3.7%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 0.0%	2 0.2%	4 0.4%	- 0.0%	34 1.5%	40 0.6%	108 0.8%
무역원활화	6 0.8%	2 0.2%	4 0.4%	4 0.3%	24 1.1%	40 0.6%	78 0.6%
국가안보요건	1 0.1%	3 0.3%	1 0.1%	1 0.1%	8 0.4%	14 0.2%	61 0.5%
명시되지 않음	6 0.8%	2 0.2%	2 0.2%	1 0.1%	6 0.3%	17 0.3%	91 0.7%
기 타	19 2.5%	5 0.6%	21 2.0%	- 0.0%	- 0.0%	45 0.7%	496 3.8%
합 계	772	876	1,031	1,252	2,252	6,183	13,109

● [그림 7]에서 TBT통보문의 목적별 분류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눠 살펴보면

- 「새로운 국내법규 및 기술의 채택」에서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 혁신 등 신기술개발에 따른 규제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선진국들의 규제들을 따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7〉 국가분류에 따른 목적별 통보문 비중



● 참고로, TBT통보문을 무역 분야별로 구분하면 「식품·의약품」(45%), 「전기전자」(14%), 「수송물류」(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2010년 분야별 TTBT 통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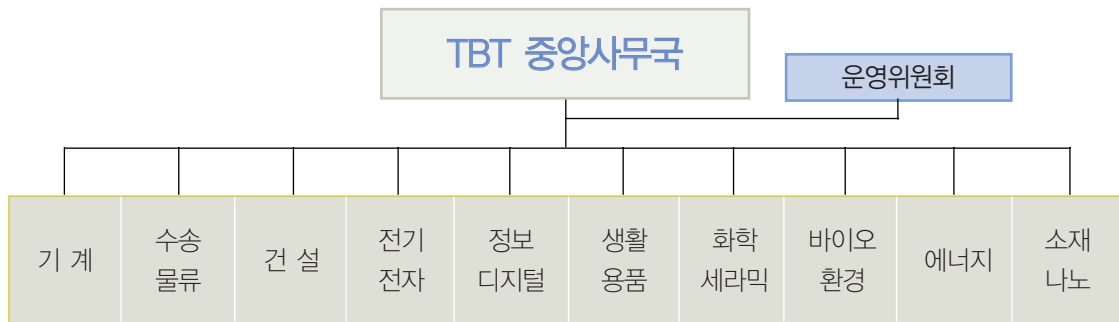
분 야	식품·의약품	전기전자	수송물류	화학세라믹	생활용품	기타	합계
건수	429	211	188	117	105	369	1419
%	30	15	13.2	8.2	7.6	26	

TBT 중앙사무국 주요활동

WTO TBT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TBT 통보 및 보급을 위하여 3개 부처(농식품부, 복지부, 기표원)에서 공식질의처를 운영중이었으나,

- 한-미 FTA 협정 이행합의를 계기로 국내 TBT 업무의 총괄조정과 대외 창구단일화를 위하여 2008년 9월 「TBT 중앙사무국」을 설치하였다.
-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 에너지, 화학 등 10개 분야 160여명의 TBT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제(美), 타이어 인증제도(인도) 등 우리기업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 WTO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 본회의 및 양자 협력 등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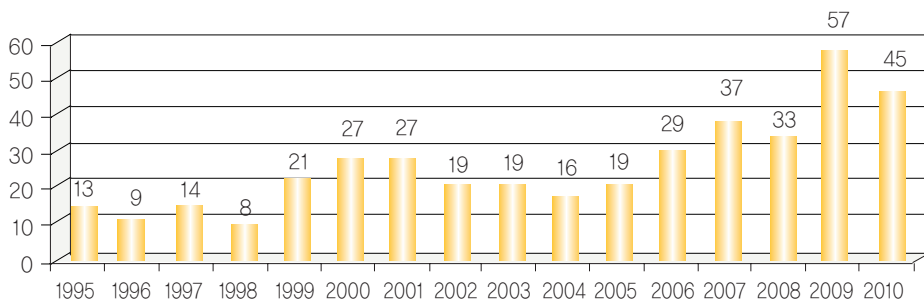
〈그림 8〉 TBT 중앙사무국 및 운영위/실무위



※ 운영위에는 외통부, 농림부, 식약청 등 TBT 관련부처 참여

- (TBT 통보의무) 1995년 WTO TBT 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도 꾸준히 TBT 통보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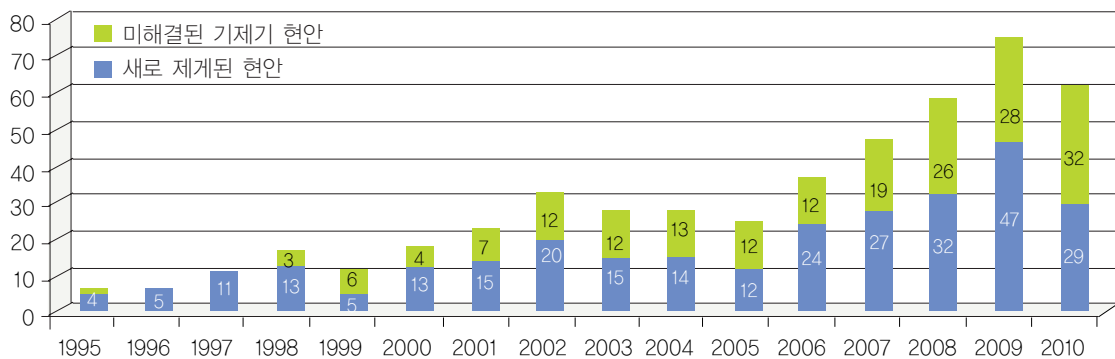
〈그림 9〉 우리나라 TBT 통보 실적(1995년~2010년)



WTO TBT위원회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로는 새로 제기된 현안뿐만 아니라 기존 회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와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국가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연도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1995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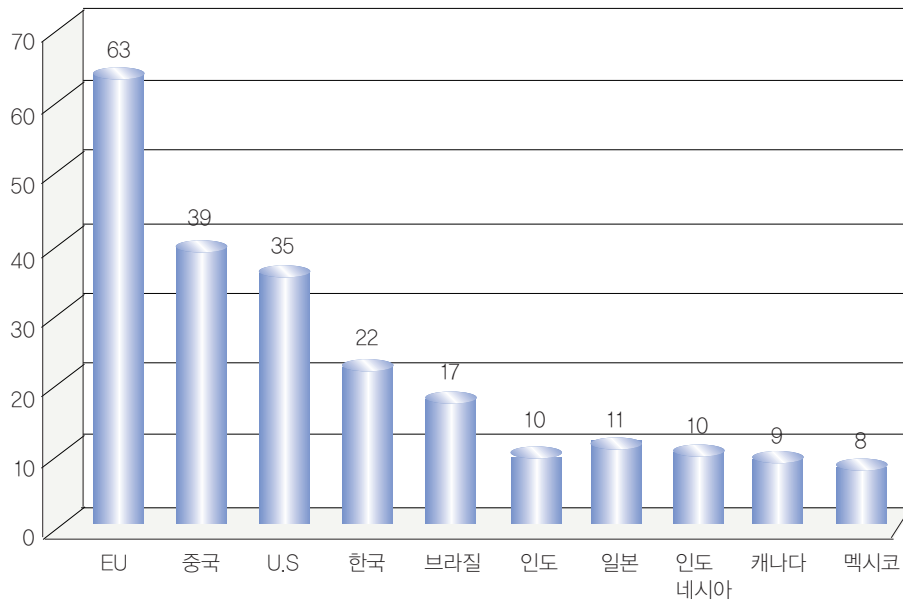
- 특정무역현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가정보 및 설명 요구」,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불투명」, 「합법성 및 근거요구」, 「국제표준과의 부조화」 등 직·간접적으로 기술규제가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기 때문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특정무역현안의 유형(1995~2011. 5월)

유형	제기된 현안의 수
추가 정보 및 설명 요구	200
불필요한 무역 장벽	176
불투명성	142
합법성 및 근거 요구	100
국제표준과의 부조화	94
차별적 조치	76
부적절한 유예기간	51
특별 또는 차별적 조치	11
기술원조	6

TBT 중앙사무국 주요활동

〈그림 11〉 WTO TBT위원회에서 STC 제기된 국가(1995년~2011년 5월)



- EU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미국, 우리나라 순이다.

-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한 것을 고려할 때 최근 WTO 회원국들 중 가장 많은 특정현안건수를 제기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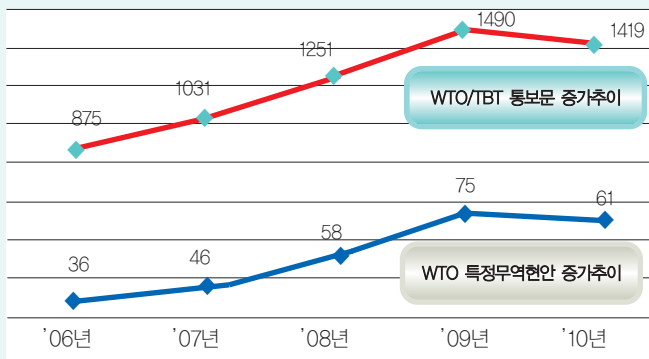
■ 우리나라도 기술규제에 대해 제기당한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4위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 TBT통보문수가 394건으로 10위임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그동안 국내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문제제기에 대한 방어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적극 발굴하고 WTO TBT위원회, 양자협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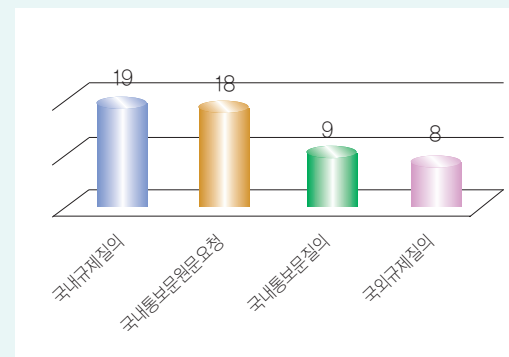
〈그림 12〉 TBT 통보문 관련 우리나라 질의 및 의견 대응 건수(2010년)

국내규제관련 외국의 질의/의견 건수	55건
국외규제관련 우리나라의 질의/의견 건수	21건

연도별 TBT 통보문 통보건수



주요 대응 내용 및 건수('10년)



- 2010년에는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제(美), 타이어 인증제도(인도) 등 총 6건의 무역제한적인 규제에 대해 WTO에서 총 13회 문제제기하고 23건의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4〉 아국제기/아국대상 특정무역제한 건수(2005년~2010년)

[총건수(계속/신규), (제기횟수)]

내용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5월
	위원회 전체현안		24(12/12)	36(12/24)	46(19/27)	58(26/32)	75(28/47)	61(32/29)
아국제기 건수		1(3회)	4(8회)	2(4회)	7(9회)	8(8회)	6(13회)	5(5회)
아국대상 건수		2(3회)	2(6회)	2(4회)	3(4회)	4(5회)	3(6회)	3(3회)

TBT 중앙사무국 주요활동

■ 지난 1년간 주요 대응 사례

① [인도] 상공부의 자동차 타이어 강제인증제도 신설

▶ (규제내용) 타이어에 대해 '10. 5월부터 인도 표준원(BIS)의 강제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수입, 판매 금지를 발표 ('09. 11월)

▶ (기업애로) 제도 수용을 위한 업계 준비 기간이 짧고, 과도한 자료요구, 행정처리 지연 등

▶ (대응) WTO/TBT위원회, 인도 상공부·인도표준원 방문('10. 11) 등을 통해 제도 시행 2차례 연장('11. 5월 시행)
 ※ 한국·금호타이어 등 아국 수출기업이 인증 획득에 애로를 겪고 있어 지속적 대응·지원 필요

② [미국] 교통부(DOT)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정 강화

▶ (규제내용) 휴대용 전자제품(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소형 리튬이온 전지를 항공운송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항공 운송수량 제한, 포장 강화, 보관위치 제한 등 규제 시행 발표 ('10. 1월)

▶ (기업애로) 휴대폰 제조업체는 연간 약 3억불의 추가 운송비용 증가 및 신제품 출하 지연 불가피

※ 리튬이온전지 사용 소형 전자제품의 對美 수출액 규모 152억불('09년)

▶ (대응) WTO/TBT위원회 활동('10~'11. 3월), 미 관리에산국(OMB) 방문('10. 11월) 등을 통해 운송규제 강화 반대 의견제시(ICAO 국제기준과 부합화 요청, 운송규제 강화시 총전율 50% 미만인 경우 예외조항 추가 요청)

※ 현재 아국 의견이 반영되어 미 하원에서 동 개정안의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상·하원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③ [미국] 환경청(EPA)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제3자 인증 의무화



▶ (규제내용) 제조업체가 자체 판정·부착하던 에너지스타 인증마크를 EPA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이 판정·부착하도록 변경('10.4월)

▶ (기업애로) 미국 내 시험소에서만 인증이 가능하여 연간 수백만\$ 이상의 인증추가 비용 부담 및 인증지연 우려 등

※ 에너지스타 관련 우리업계의 대미 수출액(해외공장 포함)은 145억불('09년)

▶ (대응) WTO/TBT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제기(2회), 양자협의(4회)등을 통해 KOLAS의 EPA 인정기관 자격 획득 ('10. 9월),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중 북미소재 조항 삭제('11. 1월) 등 우리업계 의견 반영

〈표 5〉 주요 무역기술장벽 해소사례(2008년~2010년)

년월	국가	기술규제 내용	대응 결과	대응유형		'08년 수출액
				양자	다자	
'08. 3	노르웨이	소비자제품의 18개 유해 물질 사용금지	• WTO('08. 3, '08. 7)에서 문제 제기하여 DEHP 등 8종 제외		○	83억불
'08. 6	인도네시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SNI 강제인증	• WTO('08. 7)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철회		○	1.23억불
'08. 7	사우디	모든 수입제품에 적합성 인증서 첨부	• MoU 체결('08. 6), 국내 기관을 적합성 인증기관으로 지정('08.12)	○		34.7억불
'08. 7	중국	13개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강제인증(ISCCC)	• 미국·일본과 공조, WTO('09. 3)에서 개선 요청, 시행일을 1년 연기('09. 5)	○	○	0.1억불 (8억불 확대가능)
'08. 11	미국	12세 이하 어린이용품 안전 적합성인증을 의무화	• KOLAS 시험기관 지정('08. 11)	○	○	(장난감경우) 0.16억불의 30% 감소
'08. 12	인도	17개 철강재/철강제품에 대한 BIS 강제인증	• 일본, EU와 공조하여 대응, 1년 시행 연기('09. 2)		○	9.5억불
'08. 12	EU	타이어 소음제한 인증마크 부착	• 한-EU 공동위 논의('09. 2) 및 WTO('09. 3)에서 시행 연기요청, 별도 시험성적서 첨부 후 판매허용	○	○	8.4억불 (재고 1억불)
'08. 12	EU	REACH 사전등록 마감 및 니켈규제 추진	• WTO('08.11, '09.3)에서 시행 연기 및 보완요청 : 별도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추진은 계속		○	연간3,300억원 비용 추가 부담
'09. 3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에 대한 SNI 강제인증	• 인증 시료수를 축소 • 양국간의 MOU논의 합의	○	○	3억불

TBT 중앙사무국 주요활동

년월	국가	기술규제 내용	대응 결과	대응유형		'08년 수출액
				양자	다자	
'09. 2	에콰도르	공산품(타이어, 철강,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인증서 첨부	• 미국과 공조하여 대응, 규제 철폐('09.5)		○	6.26억불
'09. 3	태국	공산품(타이어,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적합성인증 기준변경	• 인증 시료수를 축소 • 양국간의 MOU 논의 합의: KS인증 경험공유 추진	○	○	57.8억불
'09. 8	말연	공산품(타이어,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적합성인증 기준변경	• 시행일을 2개월 연기 시료수 및 심사일수 축소 • 양국간의 MOU 논의 합의	○	○	7.4억불
'10. 1	미국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정강화 추진	• DOT에 의견 제출('10.3) • WTO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 ('10.3, 6) • UN 위험물운송 전문가소위 (UN TDG SCOE) 참여('10.6) • 미국 OIRA 기관 협의방문('10.11)	○	○	152억불 (휴대폰 기준)
'10. 3	EU	EU RoHS 개정안	• EU TBT질의처로 의견 제출('10. 3) • WTO TBT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상정('10. 3, 6, 11) • EU 양자협의 ('10. 3, 6, 11) • 일본과의 공조활동을 위한 양자회의('10. 3, 6, 11)	○	○	
'10. 4	미국	Energy Star 제3자 인증 의무화 ('11. 1 시행)	• EPA에 의견 제출('10. 6) • WTO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10. 6) • EPA 담당자 면담 ('10. 7) • KOLAS의 Energy Star 인정기관화후 국내 시험기관지정 ('10. 11) 추진중	○	○	145억불 (해외공장 제품 포함)
'10. 4	EU	EU 제품판매와 관련한 인정체계 및 시장감시	• EU TBT 질의처로 의견제출 ('10. 4) • WTO TBT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상정('10. 6)	○	○	



TBT 중앙사무국 주요활동

년월	국가	기술규제 내용	대응 결과	대응유형		'08년 수출액
				양자	다자	
'10. 5	인도	타이어제품에 대한 BIS 강제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 인증 시행일정 6개월 연장('10. 5) • BIS 인증 시행일정 6개월 추가연장('10. 11) • BIS 타이어 인증담당자 면담 : ISI 각인품의 해외판매금지 조항 등 TBT 우려사항 제기('10. 11) 	○	○	시장진입 초기단계
'10. 5	중국	13개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CCCIS) ('08. 7 발표, '10. 5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5, 시행일을 1년 연기하고, 대상을 정부조달분야로 한정 • 미국·일본과 공조, Source Code 유출방지 시스템구축 요청 중 	○	○	0.1억불 (수역불 확대가능)
'10. 5	미국	NRC(美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개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개정안 분석한 결과 UAE 공급 원전 설계도 변경 필요성 대두 • 미국 TBT질의처로 의견제시기간 연장 및 시행일 연기 요청('10.7) • 원자력연구소 및 한국전기협회에 현안 사안 전달 	○		400억불 (UAE 원전 수주 규모)
'10. 6	캐나다	에너지 효율 제3자 인증 의무화('10. 9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질의처로 유예기간 요청 제출('10.8) • WTO TBT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상정('10. 11) • 캐나다 양자협약('10. 11) 	○	○	
'10. 10	인니	전기주석도금강판 강제인증 (SNI 인증) ('10. 10 WTO통보, '11. 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2, 추가유예('11.8 연기) 및 KS 동등성 인정 요청 • '11. 1 상무관, 인니 산업부에 우리측 의견 전달 및 인증기준 등 세부자료 요청 	○		1천만불 ('09년대비 75.9% 증가)
'10. 12	호주	형강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AS 인증) ('11.7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12 TBT질의처 미통보에 대한 의견 전달 • '11. 1, 6개월 추가 유예 및 KS 동등성 인정 요청 • KOLAS 시험소 지정 협의 	○		2.7천만불 (수역불 확대 가능)
'11. 3	인도	타이어제품에 대한 BIS 강제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 인증취득 애로사항 전달('11. 3) • WTO TBT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상정('11. 3) • BIS 타이어 인증담당자 면담 : 금호타이어('10. 3) 	○	○	시장진입 초기단계

TBT 중앙사무국 주요활동

년월	국가	기술규제 내용	대응 결과	대응유형		'08년 수출액
				양자	다자	
'11. 3	미국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정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통상회의 의제('11. 3) • WTO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11. 3, 6) 		○	
'11. 5	중국	인정제도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CNCA방문('11. 5) • WTO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11. 6) : 해외 인정기관, 인증기관 진출가능성 등 상세정보 요청 	○	○	
'11. 6	프랑스	탄소라벨링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11. 6), 수입제품에 대한(운송거리로 인한 탄소발생) 대책방안 질의 및 상세정보 요청 		○	
'11. 6	중국	China Ro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11. 6) : 사실상 강제인증 우려전달, 상세정보 요청(제도 범위, 시행시기) 		○	
'11. 6	인도 네시아	철강제품에 대한 SNI 강제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특정무역현안 제기('11. 3, 6) : 상세정보 요청(제도 범위, 시행시기) 	○	○	
'11. 6	우크 라이나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TBT 질의처로 상세정보 요청('11. 6) 			
'11. 6	러시아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TBT 질의처로 상세정보 요청('11. 6) 			

● 기 논의된 안전 중 대응 미 해결된 안전은 차기 WTO TBT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 TBT 중앙사무국은 그 외 한-미 통상협약, 한-미 산업협력의, 한-중 적합성소위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난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1년 제2차 WTO TBT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총 51건(신규 15건, 계속 36건)의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 우리나라는 프랑스 탄소라벨링법,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환경오염규제(RoHS) 등 7건의 STC를 제기하고, 미국, EU, 일본 등 7개 국가와는 별도의 양자협의를 추진하였다.

〈표 6〉 2011년 제2차 WTO TBT STC 주요 논의내용(우리측 제기)

대상국	기술 규정	제기한 내용	상대국 답변
프랑스	탄소라벨링 법제화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제품(운송거리로 인한 탄소발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 수입제품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안 검토 중이므로 상세정보 차후 통보 예정
미 국	리튬이온전지 운송 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진행상황 및 일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상하원 의견 조율 중이므로 차후에 자세한 내용 통보예정
중 국	China Ro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상 강제인증 우려 전달 상세정보 요청 (제도 범위,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논의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상세 정보 차후 통보 예정
	인정제도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세정보 요청 (제도범위,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논의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상세 정보 차후 통보 예정
EU	EU RoHS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mogeneous Material 시험 방식으로 인한 제조업체 경비 부담 우려 전달 유예기간 연장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RoHS 부합 업체에게 큰 부담 아니라는 입장
	제품판매와 관련한 인정체계 및 시장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간상호인정체계 수용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회원국내 인정체계 정비와 관련되어 있음 다자간상호인정체계 인정 재강조
인도 네시아	주석도금강판 강제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세정보 요청 유예기간연장 및 시행 간소화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관령 미채택 채택후 상세 기술규제안이 나올 경우 통보 예정 시료수 5개로 확정
	슬래그에 대한 유해폐기물 지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래그에 대한 유해폐기물 지정 삭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니 환경부와 산업부내 의견 조율 중임 ※ 산업부는 우리 의견에 찬성
인 도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관련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속한 인증절차 진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S획득 지연 국내 회사 정보 요청 → 상황 파악 후 진행여부 결정

2011년 WTO TBT위원회 주요내용

〈표 7〉 양자협약의 국가별 협력 의제 리스트

국가명	관련 의제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안전규정 개정안 - 제3국 규제 공조활동 (프랑스 탄소라벨링법, 중국 RoHS)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탄소라벨링법 및 EU 인정제도 개편, EU RoHS II - 제3국 규제 공조활동 (인도 타이어)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RoHS - 중국 인정제도 관리방안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규제 공조활동(프랑스 탄소라벨링법, 인니 주석도금강판, 인도 타이어, 중국 RoHS)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주석도금강판 인증제도 - 인니 슬래그에 대한 유해폐기물 지정문제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규제 공조활동 (프랑스 탄소라벨링법)



- 최근 5년간 기술규제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기술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우려된다.
 -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전면에 내세워 녹색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제들은 환경, 생태계 보호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WTO TBT협정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어 대응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 WTO TBT위원회에 제기되는 특정무역현안 중, 미해결된 STC안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와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국가간의 논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세와 수세의 양입장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 「TBT 중앙사무국」이 올해로 출범한지 3주년이 된다.
 - 그동안 해외기술규제가 국내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수출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 내부적으로는 부처별로 분산되었던 TBT 업무를 단일화하여 기술장벽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투명성을 높여 시장친화적인 무역환경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추진과제

■ 중소기업 TBT 해소지원 강화

● 해외 기술규제 정보의 신속 입수체계 구축

- 해외 네트워크* 를 통해 주요국 기술규제의 최신 논의 동향을 규제 태동기부터 사전 입수하여 중소기업에 제공

※ 해외 공관, 파견관, 코트라,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및 대기업 해외지사(공개가능한 범위 내) 활용

● 수출중소기업 TBT 컨설팅 제공

- 업종별 TBT 실무위원회를 시험연구기관, 통상법 전문가 등으로 개편하여 TBT 애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TBT 콜센터」, 지역별 TBT 교육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맞춤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 TBT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 중소기업이 TBT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TBT 종합정보망」을 구축

※ 법령, 규격, 수출 및 인증 절차, 무역통계, 분석 보고서 등 통합 제공(추진중)

■ 기술규제 국제협력 강화

● FTA/TBT 협정 활용

- 기체결된 FTA TBT협정 활용 및 향후 추진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

※ 한-EU FTA (발효예정 : 2011.7.1) TBT협정에 따라 한-EU TBT위원회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수출 애로사항 해결

● 신흥국과의 TBT 양자협력 채널 확대

-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중 주요 교역국과는 별도의 양자회의, 「산업협력위」, 「통상협의」, 등을 통해 TBT 협의를 정례화

※ 양자정례회의(3/6/11월): USTR(美) · EC/EUCCK(EU) · METI(日)



-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브라질 등 신흥국과는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와 같은 정기적 TBT 양자 협의체 신설 및 확대

※ 양국 장관(한:산자부, 중:질량검험검역총국)이 서명한 표준·적합성분야 정례회의('04년~), 2011. 7월 우리나라 개최

● 「WTO TBT위원회」· 활동 강화

- 우리 수출업체의 TBT 현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WTO TBT위원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 EU 수준으로 활동 강화
- WTO/TBT협정 후속의 DDA 비관세장벽(NTB) 협상에도 지속 참여

■ 국내 TBT 지원 체계 정비

● TBT 전담지원기관 지정·운영

- 해외 기술규제 관련 동향조사·심층분석·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설치

※ 그 일환으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무역투자연구원에서 1차 사업(2011년) 추진

● TBT 운영위 및 실무위 내실화

- 외교부,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등 TBT 관련부처 간 협력 및 일관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TBT 운영위원회 개최 정례화
- '08년 구성된 TBT 실무위원회(10개분야, 160여명)를 재조정·통합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및 관리 효율화 추진

● TBT 인식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업종별 TBT 대응전략, 우수 대응사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TBT KOREA 컨퍼런스」 개최(11월)

※ 매년 주요국의 기술규제 유형 및 대응전략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공동 세미나 개최 (2010. 12월 제1회 TBT KOREA 개최)